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26 선고 2019가단651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주식회사*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

담당변호사 장한각

변론 종결 2019. 10. 15

판결 선고 2019. 11. 26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5,879,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9. 부터 이 사건소장부분송달 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 마을버스(이하 ' 원고 마을버스' 라 한다)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, 피고는 F 투싼 차량(이하 ' 피고 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

나. G 는 2018 . 10. 29. 09: 35경 E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.

그 과정에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고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원고 마을 버스의 좌측면과 접촉하게 되자 G는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였고, 버스승객인 I은 급제동으로 인해마 을 버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(이하 ' 이 사건사고'라 한다).

다. I은 J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8. 10. 31. 20:45경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2, 3호증,을 제1,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사건 사고는 원고 마을 버스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않고 주행하다가 원고 마을 버스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% 에 해당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I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89, 699, 560원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40%에 해당하는 35,878,824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오히려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,원고마을 버스의 운전자 G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않은 채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차선으로변경하다가 피고 차량과 접촉하게 되자 급제동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것 인바, 피고 차량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이유영